



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4. 17.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공 선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변경)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규정(안 제4조, 안제5조)

라.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사전점검대상, 점검시기 등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편의시설의 사후점검, 점검반 및 업무의 대행 규정(안 제9조~제10조)

의2)

바. 점검요원의 의무 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11조~제13조)

사.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 및 수당 등 규정 (안 제14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다. 관련부서 : 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6. 4. 7. ~ 2026. 4. 13.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사전점검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편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안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안 제10조(점검반), 제10조의2(업무의 대행)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편의법 법적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 시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 사후 점검반 별도 구성 시 인건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편의시설 설치비용
 - 지원대상 : 편의시설 설치 비 의무대상 시설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시설 선정
 - 산출기초 : 시설당 평균 2,500천원 × 40개소 = 100,000천원
 - 이동식 경사로 1식 약 500천원
 - 단차제거 1식 약 800천원
 - 손잡이 등 설치 1식 약 500천원
 - 화장실 개선 1식 약 2,500천원
 - ※ 설치항목에 따라 개소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사후 점검반 구성 인건비
 - 지원대상 : 편의시설 사후 점검반
 - 지원방법 : 편의시설 사후 점검반(2인) 운영
 - 산출기초
 - 팀장급 1인 (3급 14호) 66,267천원
 - (급여) 3,952,900원 × 12개월 = 47,435천원
 - (제수당) 1,071,800원 × 12개월 = 12,861천원

- (사회보험료) 497,600원 × 12개월 = 5,971천원
- 사원급 1인 (5급 7호) 44,917천원
- (급여) 2,676,200원 × 12개월 = 32,115천원
- (제수당) 729,600원 × 12개월 = 8,755천원
- (사회보험료) 337,280원 × 12개월 = 4,047천원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업안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편의시설 설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사후 점검반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11,184	111,184	111,184	111,184	111,184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 편의시설 설치 : 시 100%
- 사후 점검반 운영 : 시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량 검토

4.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 문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사 업 비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지방세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